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

트럼프 행정부 계획, 소송 제기한 주·개인·단체에는 적용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출생한 즉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자동 출생시민권 폐지 계획을 일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전국 단위로 효력을 미치는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제약해, 해당 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나 개인, 단체에만 적용되도록 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제한안은 최소한 일부 주에서는 앞으로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심리 대상에는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주에서 제기된 소송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는 21개 주가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ucla.edu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오랫동안 해석돼 왔으며, 진보·보수 성향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 소셜에 "연방대법원의 거대한 승리!" 라는 글을 올렸다.

한을 넘어서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반대 의견을 낭독하며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의 참극"이며 "헌법을 우회하라는 초대장" 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정책의 합헌 여부 자체가 아니라, 판사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치 동조자들은 법원이 자신의 의제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적 금지명령은 과거 행정부에서도 사용돼 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졌다는 평가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외교관 자녀만 예외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이 사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의견을 달리했다.

보수 진영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행정부가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이 그런

건강보험사 '사전 승인' 개선 약속

지연 최소화 등 개혁...정부 "이행 안 되면 규제"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승인 절차를 표준화하고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연방 보건당국은 올해 말까지 사전 승인 절차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6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HHS)와 미국건강보험계획협회(AHIP)에 따르면, 이번 개혁에는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 전자 방식의 사전 승인 신청 표준화
-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범위 축소
- 치료 도중 보험을 변경해도 기존 승인을 유지
- 승인 여부와 이의제기 과정의 투명성 및 소통 강화
-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 실시간 승인을 통해 지연 최소화
- 임상적 거절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가 검토

환자나 의사가 특정 검사나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보장하기 전에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절차는 서류 제출, 거절 통보, 항소 과정을 거치면서 번거로운 절차로 악명 높다.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들이 이 과정을 더욱 강화하면서,

환자와 의사, 그리고 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졌다. 이에 각 주에서는 절차를 완화하려는 다양한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사의 이런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피츠버그대학교의 미란다에 이어 보건정책학 교수는 "이것이 정말 이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며,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 이라고 말했다.

연방 보건당국은 보험사들의 이번 약속이 자발적이긴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설명했다.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국장은 또 다른 이유를 들었다. 오즈 국장은 "이 문제로 거리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며, 지난해 12월 유니티헬스케어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이 피살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용하지 않는

다. 분노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5일 미네소타주 미네툰카에서 유니티헬스케어의 치료 거절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톰슨 CEO 피격 사건 이후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도 거세게 분출됐다. 오즈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관료적 장애물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버 교수는 "한편으로는 사전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근로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규모 세금·예산 법안의 일환으로,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근로 요건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버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은 고용 증가 효과 없이 보험 상실만 초래한다" 며, 사전 승인 절차가 개선되더라도 전국적으로 근로 요건이 도입된다면 "한 가지 행정적 부담을 다른 부담으로 바꾸는 셈" 이라고 평가했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